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23호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11년도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상의 근거법령명을 현행화하고, 일부 조항을 「학교급식법」 및 인천시 현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관련 근거법령명을 현행화하여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 나. 학교급식 시행관련 행정체계를 현실정에 맞게 정비함.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다. 군·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의2)

라.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의 내용을 정비함. (안 제10조, 제11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8(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440-6213, 팩스 440-8763, 이메일 jyu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을 “과”로,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친환경무상급식”을 “급식”으로, “조리·가공·제조하는데”를 “조리·가공·제조하는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를 ““친환경농·축·수산물수급체계””로, “재배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를 “재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로, “수산물”을 “축산물·수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친환경무상급식”을 “급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제2조제6호다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무항생제”를 “일정등급”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에서 처리된”을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이 적용된”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해당”을 “그 밖에 해당”으로, “농·특산물”을 “농·축·수산 특산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무상급식”을 “학교급식”으로, “예산지원”을 “재정분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를 “친환경농·축·수산물 수급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을 위한 학부모와 시민의 참여”를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7월말”을 “9월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즉시 교육감에게 알리고”를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로, “제출하여야”를 “보고 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군수·구청장”을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현물의”를 “현물을 지원하는”으로, “지원대상자

에게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수·구청장을 통해 시장”을 “교육감 또는 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구청장”을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장 등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의 사용내역을 군수·구청장”을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감 또는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장”을 “시장 및 교육감”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시장 및 교육감”으로 한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중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2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축·수산물 관련 단체(조합)가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제3항제7호 중 “급식관련”을 “급식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교육재정 관련 전문가 또는 시 소속 공무원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교육지원담당”을 “급식업무담당”으로, “수산담당”을 “수산유통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있는 학교 등에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식량자급율과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생산을 활성화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과 -----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품위생법」----- -----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 “급식경비”란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식품비”란 친환경무상급식	4. ----- 급식-----

현행	개정안
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u>조리·가공·제조하는 데</u>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5. "<u>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u>"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와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u>재배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과 이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u> 말한다. 6. "<u>식재료</u>"란 <u>친환경무상급식</u>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축·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u>친환경농업육성법</u>」에	----- ----- <u>조리·가공·제조하는데</u> ----- -----. 5. "<u>친환경농·축·수산물수급체계</u>"----- ----- <u>재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u>--- <u>축산물·수산물</u>---. 6. ----- <u>급식</u>----- ----- ----- ----- ----- ----- ----- ----- ----- -----. 가. 「<u>친환경농어업법</u>」에 따

현행	개정안
<u>따른 친환경 인증 농산물</u> 나. 「<u>농산물품질관리법</u>」에 <u>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u> 다. 「<u>축산법</u>」 및 「<u>축산물가 공처리법</u>」에 따른 <u>무항생 제</u> 이상의 <u>축산물</u>로서 「<u>축산물 위생관리법</u>」에 <u>따른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 적용</u> <u>작업장에서 처 리된 축산물</u> 라. 「<u>수산물품질관리법</u>」 제6 <u>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 은 수산물</u> 마. 「<u>식품산업진흥법</u>」 제22 <u>조제1항에 따라</u> <u>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u> 바.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u> <u>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 물</u> 사. <u>그 밖에 급식지원센터가 인정한 식재료</u> 7. (생략)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u>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u>	<u>른 인증 농수산물</u> 나. 「<u>농수산물 품질관리법</u>」 <u>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u> 다. ----- 「<u>축산물 위 생관리법</u>」----- <u>일정등 급</u> ----- <u>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u> ----- ----- ----- <삭 제> 마. 「<u>식품산업진흥법</u>」에 따 <u>른</u> ----- ----- 바. <u>그 밖에 해당</u> ----- ----- <u>농·축· 수산 특산물</u> <삭 제> 7.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u>시장</u>-----

현행	개정안
<u>한다</u>)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u>친환경무상급식</u> 지원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u>예산지원</u>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u>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u>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생략) 4. <u>지역의 식량자급율과 친환경·유기농 생산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생산, 계약재배와 수급에 관한 사항</u> 5.·6. (생략) 7. <u>친환경무상급식지원을 위한 학부모와 시민의 참여</u>에 관한 사항 8. <u>방학 및 휴일 중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친환경무상급식지</u>	----- ----- ----- ----- ----- ----- ----- 1. <u>학교급식</u> ----- ----- <u>재정분담</u>----- ----- 2. ----- <u>친환경농·축·수산물 수급체계</u> -----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6. (현행과 같음) 7. <u>친환경무상급식 지원</u>----- ----- -----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원에 관한 사항</u> 9. · 10. (생략)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매년 <u>7월</u>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u>즉시 교육감에게 알리고</u>,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u>제출하여야</u>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등”이라 한다)로 한다. 1. · 2. (생략)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u>보육시설</u> 4. (생략) ② (생략)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계획 시행을 위하여 제9조의 친	9. · 10. (현행과 같음) ② ----- <u>9월</u> 말-----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교육감 및 군수·구청장</u>에게 <u>통보하고</u>----- ----- <u>보고</u> 하여야 --. 제4조(지원대상) ①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어린이집</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① ----- -----

현행	개정안
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경비를 <u>군수·구청장</u>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한다. 다만, <u>현물의</u>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u>지원대상자</u>에게 지원한다. ②·③ (생략) 제6조(지원신청) ① 시장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은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u>군수·구청장</u>을 통해 <u>시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u>군수·구청장</u>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u>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을 지급받은 학교장등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입하여야 하며, 그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u>	----- ----- <u>교육감 및 군수·구청장</u>----- ---. ----- <u>현물을 지원하는</u> --- ----- <u>지원할 수 있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① ----- ----- ----- ----- ----- <u>교육감 또는 군수·구청장</u>----- ---. ② <u>교육감 및 군수·구청장</u>--- ----- -----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u>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장 등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아 선택할 수 있다.</u>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등은 <u>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의 사용내역을</u> <u>군수·구청장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③ <u>군수·구청장은</u> 제2항에 따른 <u>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의 사용내역을</u>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8조(지도·감독 등) ① <u>시장</u>, 군수·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u>지도·감독하여야 한다.</u> ② <u>시장</u>,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등에게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u><신설></u>	② ----- --- <u>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감 또는 군수·구청장</u>----- -----. ③ <u>교육감 또는 군수·구청장</u>- - <u>지원금의 집행결과를</u> ----- -----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도·감독 등) ① <u>시장 및 교육감</u>----- ----- ----- <u>지도·감독할 수 있다.</u> ② <u>시장 및 교육감</u>----- ----- ----- -----. ③·④ (현행과 같음) <u>제8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u> ① <u>시장은</u> <u>군수·구청</u>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설치·운영)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친환 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u>설 치·운영한다.</u>	<u>장이 「학교급식법」 제5조제4 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정적으 로 지원할 수 있다.</u> <u>② 군·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의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u>
제10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친환 경무상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략) 2. <u>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식 재료 품목 내역</u> 3. ~ 6. (생략)	제9조(설치·운영) ----- ----- ----- ----- <u>설 치·운영할 수 있다.</u> 제10조(기능) ----- ----- -----.
제11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 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제10조(기능) ----- ----- ----- 1. (현행과 같음) 2. <u>지원대상과 지원규모·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u> 3. ~ 6.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① ----- ----- -- <u>15명</u> ----- -----.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시 행정부시장과 급식업무 담당국장 또는 본부장, 시 교육청 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 5. (생략) 6. <u>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및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7. <u>급식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8. <u>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9. ~ 11. (생략) ④ (생략)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시 <u>교육지원담당관</u>, 농축산유통과장, 수산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하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농·축·수산물 관련 단체 (조합)가 추천하는 사람</u> 7. <u>급식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u> ----- 8. <u>교육재정 관련 전문가 또는 시 소속 공무원</u> 9. ~ 11.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교육협력담당관</u>----- ----- ----- -----

현행	개정안
서기는 <u>교육지원담당</u> 사무관, 농축산유통담당 사무관, <u>수산담당</u> 사무관이 되며 각각 간사를 보조한다. 1. <u>교육지원담당관</u> 간사 : 친환경경무상급식의 예산확보 및 집행과 회의자료 작성에 관한 사무의 총괄 2. 3. (생략) 제17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u>설치·운영한다</u>. 1. ~ 8. (생략) ② ~ ⑤ (생략)	----- <u>급식업무담당</u> ----- ----- <u>수산유통담당</u> ----- -----. 1. <u>교육협력담당관</u> ----- ----- ----- 2. 3. (현행과 같음) 제17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 ----- <u>설치·운영할 수 있다</u>.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학교급식법」 ☐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 10. 17., 2010. 7. 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7. 10. 17.]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 유아교육법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3. 21.,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1.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 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대상품목·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4조(수산물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④ 품질인증의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7. 11. 28.]

□ 축산업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

"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3. 3. 2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 및 제5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요건 및 절차
2. 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절차
3. 제6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발급
4. 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비용 및 내용 등

[전문개정 2013. 7. 30.]

[시행일] 제9조제2항 중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시행일] 제9조제2항 중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 25., 2012. 6. 1., 2013. 3. 23., 2015. 6. 22., 2015. 8. 11.>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표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식품명인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 5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
6.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산업의 진흥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심의회에 수산 분야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5. 8. 11.>

⑤ 제4항에 따른 수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8. 11.>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2011년도부터 시행된 학교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반적인 조항을 관련법 및 현실에 맞게 개정.
- 학교급식 지원 시행관련 계획수립 및 지원체계 관련 조항을 현실정에 맞게 개정 (안 제3조, 제5조~제8조)
- 학교급식법 제5조에 의거 군·구 급식지원센터설치시 행정적 지원근거 마련 (안 제8조의2)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우리시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2017년도 중학교 확대시행, 2018년도 고등학교 확대 시행 및 2019. 3월부터는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 시행예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예상됨.

나. 추계 결과

- 유치원, 초·중·고교 무상급식의 지속적인 지원 추진시 매년 700~900여억원의 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재원분담합의기준(식품비, 시간제보조원인건비) 총 급식 경비로 매년 1,800~2,000여억원 소요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시, 군·구, 교육청의 재원분담을 합의에 의거 예산 반영 추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 년)	2차년도 (2020 년)	3차년도 (2021 년)	4차년도 (2022 년)	5차년도 (2023 년)	계
세 출	학교급식 지원	171,309	197,577	202,836	207,088	208,284	987,094
재 원 조 달	시비 (일반회계)	76,385	88,714	90,934	92,661	93,130	441,824
	군·구비	48,019	55,850	57,379	58,605	58,915	278,768
	교육청	46,905	53,013	54,523	55,822	56,239	266,502
	기 타	-	-	-	-	-	-

○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시간제보조원인건비)

- 초,중학교 : 시 40%, 군구 30%, 교육청 30%
- 고등학교 : 시 70%, 군구 30%
- 인건, 운영비, 저소득층 급식비 : 교육청 부담

※ 식품비 인상율 : 매년 3% 적용

(2019년도 초, 고교 5%, 중학교 8% 적용)

○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 식품비 : 시 30%, 군구 20%, 교육청 50%
- 운영비는 교육청 부담

○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 초, 중, 고, 특수학교 : 시 40%, 군구 30%, 교육청 30%
- 어린이집, 유치원 : 시 55%, 군구 45%